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93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
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【의원발의】
검토보고서



2022. 11.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2. 11. 17.
기획행정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권숙자 의원 등 8명(권숙자, 정순옥, 이진환, 이영빈, 손범구, 청창근, 장호섭, 도하석)
- 발의일자: 2022. 11. 4.(금)
- 회부일자: 2022. 11. 4.(금)
- 검토기간: 2022. 11. 4.(금) ~ 11. 10.(목)

2. 개정이유

- 조례 명칭에 ‘치안협의회’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, 경찰서 치안관련 사무가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표시함(안 제1조)
- 치안협의회 사무와 관련이 있는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(안 제4조)
-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)
- 회의 소집 횟수 규정을 변경함(안 제8조)
- 치안관련사무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함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지방자치법」,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비용추계: 미첨부대상
- 입법예고(2022. 11. 4. ~ 2022. 11. 15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‘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’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제명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하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,
- 안 제4조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강서소방서장 및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을 추가 하였으며, 안 제6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고, 안 제8조에서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도록 하였으며, 안 제10조에서 성서경찰서 및 달서경찰서 치안협의회 관련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.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의 유관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·관·경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법령위반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 관계 법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 라. 노인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범죄피해자 보호법

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·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·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,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치안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추진한다.

1.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사항
 2. 아동·청소년·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
 3.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
 4.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,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의장은 대구달서경찰서장, 대구성서경찰서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
2.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
3. 대구광역시 달서소방서장
4. 남대구세무서장
5. 서대구세무서장
6. 대구공업대학 총장
7. 계명대학교 법경대학장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아동,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
2.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
3. 행정·교육·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·관계자
4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해촉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,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

제5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) ①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·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간사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대구 달서경찰서 경무과장, 대구성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.

② 간사(간사를 맡은 기관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
2. 참여기관,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
3.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
4. 회의록 작성 및 보존
5.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의 업무는 공동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.

제8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·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(개정 2016. 12. 1)

② <삭제 2016. 12. 1>

제9조(비밀누설 금지)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(지원)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